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3

제출년월일 : '96. 1. 18
제 안 자 : 김광희의원외 5명

1. 제 안 이 유

1995년12월30일 법률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2기 지방의회가 출범함에 따른 그동안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회의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의회의원의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를 인상함.

3. 참 고 사 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

대전광역시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별표3)의 숙박료 및 식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숙 박 료 (1야당)	식 비 (1일당)	비 고
37,500	25,000	
37,500	25,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3조 (회의수당 지급) ①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별표2의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

(별표3)

<table>
<tr><th>구 분</th><th>숙박비
(1야당)</th><th>식 비
(1일당)</th></tr>
<tr><td>의 장
부 의 장</td><td>20,700</td><td>11,000</td></tr>
<tr><td>의 원</td><td>20,700</td><td>11.000</td></tr>
</table></td>
<td>제3조 (회의수당 지급) ①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별표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별표3)

<table>
<tr><th>구 분</th><th>숙박비
(1야당)</th><th>식 비
(1일당)</th></tr>
<tr><td>의 장
부 의 장</td><td>37,500</td><td>25,000</td></tr>
<tr><td>의 원</td><td>37,500</td><td>25.000</td></tr>
</table></td></tr>
</table>

⊙대통령령 제14,877호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회의수당의"를 "회의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9조제4항중 "보사환경·가정복지·산업경제·문화관광·민방위 및 소방업무를, 행정(2)부시장은 교통·도시계획·주택·도로"를 "보건사회·교통환경·지역경제·문화관광·민방

위재난관리 및 소방업무를, 행정(2)부시장은 도시계획·도로·주택"으로 한다.

[별표 5]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조례별표 2)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회의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60,000원이내	별표 6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 범위이내
시·군·자치구 의회의원	일 50,000원이내	

◇地方自治法施行令 改正理由

지난 7月부터 第2期 地方議會가 出帆함에 따라 그동안 地方議會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地方議會議員의 원활한 議政活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遠隔地나 島嶼地域에 거주하는 地方議會議員의 경우에는

地方議會의 회의출석시 交通費·宿泊費등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현행 議政活動費는 모든 地方議員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遠隔地와 島嶼地域으로서 條例가 정하는 지역의 地方議員이 회의에 출석하여 宿泊하는 경우에는 遠隔地會議出席費를 會議手當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함(令 第15條第1項).

나. 會議手當은 地方議會議員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公休日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休日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會議手當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第2項).

<법제처 제공>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제15조 관련)

- '95.12.29(대통령령제14857호)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의함 -

(단위 : 원)

구분 \ 지급기준액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시·도	의장·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6,500	37,500	25,000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6,500	37,500	25,000
시·군·자치구	의장·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6,500	37,500	25,000
	의원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6,500	18,000	18,000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5〕 <신설 '95·7·1>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회의수당 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60,000원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50,000원이내

〔별표 6〕 <개정'94.7.6>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 : 원)

구 분 \ 지급기준액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시·도	의장·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시·군·자치구	의장·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의원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6,500	16,200	10,500

비 고 :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주 62)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3.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월 18일 김광희의원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 5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96.3.)상정
심의, 수정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최진문의원)

가. 제안이유

○ 1995.12.30 법률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2기 지방의회 출범이후 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나, 공휴일이 회기중 포함되는 경우에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의원의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를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의 인상률을 감안하여 인상조치함.

3. 검 토 의 견

○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95.12.30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부수되는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회의수당 지급은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 지방의원의 출장비중 숙박비를 1야당 37,500원, 식비를 1일당 25,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의3의 규정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여비 인상하려는 것임.

○ 따라서 본안건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과 실비보전을 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안 의결

(수정된 부분 수정안대로, 그외부분 원안대로 의결)

7.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별 첨

나. 수정주요골자 : 별 첨

8. 소 수 의 견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6년 3월 21일
제 출 자 : 운영위원회 위원장

1. 수 정 이 유

○ 회의수당 지급은 회기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휴일이 회기중 포함될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회기중 휴회일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함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코자 함.

2. 주 요 골 자

○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의 단서 조항을 삭제코자 함.(안 제3조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3조(회의수당지급)①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상임위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별표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회의수당의 지급)①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상임위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별표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